

은파 오투그란데 레이크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공급개요 및 예정일정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121번지 일원
- 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8~22층 6개동 총 399세대
- 문의전화 1522-3382

■ 일정계획(예정)

구분	예정일정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1. 11. 24 (수)	http://www.은파레이크원.kr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1. 12. 08 (수)	인터넷 청약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2021. 12. 20 (월)	청약홈(www.applyhome.co.kr) 개별조회

- ※ 위 일정은 업무 추진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함.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 신청 및 당첨자 선정 장소

구분	일시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21. 12. 08 (수) 09:00~17:30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21. 12. 20 (월)	

■ 당첨자 선정 유의 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은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
② 군산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북도 거주자 순위로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개별 통지 및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 11. 15.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특별공급 공통사항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p>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